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외 장
람	

제18호 2023. 5. 3.(수)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3-147호 광양국가산업단지(금호동 문화공원)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

광양시 고시 제2023-148호 광양국가산업단지(포스코 홍보관 및 교육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5

광양시 고시 제2023-1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9

광양시 고시 제2023-152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 10

광양시 고시 제2023-1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2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3-985호 도로지정공고 ..... 13

광양시 공고 제2023-998호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5

광양시 공고 제2023-1010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6

**조례**

광양시 조례 제2004호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49

광양시 조례 제2005호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광양시 조례 제2006호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64

광양시 조례 제2007호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 67

광양시 조례 제2008호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70
광양시 조례 제2009호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광양시 조례 제2010호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83
광양시 조례 제2011호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91
광양시 조례 제2012호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96
광양시 조례 제2013호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6
광양시 조례 제2014호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규 정**

광양시 규정 제435호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	116
--	-----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09호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	129
광양시 규칙 제910호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2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 광양국가산업단지(금호동 문화공원) 개발실시계획(변경)

###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국가산업단지(금호동 문화공원)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일

## 광 양 시 장

### 1. 사업의 명칭

- 광양국가산업단지 금호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성 명: 광양시장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2014년 173호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미 조성된 금호동 850번지 일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여 부족한 주민편의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제고와 소소한 일상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공동체 교류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양시 금호동 850번지 일원
- 면 적 : 문화공원 20,496.4㎡ (1개소)

#### 5.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시행 기간

- 시행 방법: 실수요자 개발
- 사업 기간: 2022년 ~ 2024년

#### 6.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사항 - 도면 게재 생략

#####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3	공원	체육공원	금호동 819 일원	66,101.2	감)20,496.4	45,604.8	
신설	188	공원	문화공원	금호동 850 일원	-	증)20,496.4	20,496.4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3	체육공원	•구역 및 면적변경 A=66,101.2㎡→45,604.8㎡ 감)20,496.4㎡	• 광양 국가산업단지(금호동) 내 기 결정된 173호 체육공원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척
188	문화공원	•문화공원 신설 A=20,496.4㎡	• 미 조성된 173호 체육공원 일부인 850번지 일원에 스타트업 및 라이프업센터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문화공원으로 신설 변경

다)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체육공원 173(변경)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비율(%)		규모 수량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6,101.2	45,604.8	100	100.0		감)20,496.4m <sup>2</sup>
시설소계				24,263	13,882	36.7	30.4		감)10,381.0m <sup>2</sup>
도로	소계			359	159	0.5	0.3		감)200.0m <sup>2</sup>
		보도 및 광장	공원내	359	159	0.5	0.3		감)200.0m <sup>2</sup>
휴양 시설	소계			432	-	0.7	-		감)432.0m <sup>2</sup>
	①	휴게소	공원내	432	-	0.7	-		감)432.0m <sup>2</sup>
유희 시설	소계			3,887	3,887	5.9	8.5	1개소	
	②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내	3,887	3,887	5.9	8.5		
운동 시설	소계			17,671	7,934	26.7	17.4		감)9,737.0m <sup>2</sup>
	③	야구장	공원내	9,591	-	14.5	-		감)9,591.0m <sup>2</sup>
	④	축구장	공원내	7,934	7,934	12.0	17.4	1개소	
	⑤	간이체육시설	공원내	146	-	0.2	-		감)146.0m <sup>2</sup>
편의 시설	소계			1,878	1,866	2.9	4.1		감)12.0m <sup>2</sup>
	⑥	주차장	공원내	1,854	1,854	2.8	4.1	1개소	
	⑦	음수대	공원내	24	12	0.1	0.0	1개소	감)12.0m <sup>2</sup>
관리 시설	소계			36	36	0.1	0.1		
	⑧	관리시설	공원내	36	36	0.1	0.1	1개소	
녹지			공원내	41,838.2	31,722.8	63.3	69.6		감)10,115.4m <sup>2</sup>

○ 문화공원 188(신설)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비율(%)	규모 수량	비고
총 계				20,496.4	100.0		
시설소계				9,544	46.6		
도로	소계			5,446	26.6		
	A	보도 및 광장	공원內	4,484	21.9		
	B	도로		962	4.7		금호로 보도, 버스정거장 포함
편의 시설	소계			1,030	5.0		
	C	주차장	공원內	1,020	5.0	2개소	
	D	자전거보관소	공원內	10	0.0	1개소	
교양 시설	소계			3,068	15.0		건폐율:20%이하
	E	스타트업 및 라이프업센터	공원內	2,708	13.2	1개소(2층)	
	F	야외무대	공원內	360	1.8	1개소	
녹지			공원內	10,952.4	53.4		

7. 승인조건 :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추진(별첨)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는 광양시청 산단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061-797-2932)

## 광양국가산업단지(포스코 홍보관 및 교육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광양국가산업단지(포스코 홍보관 및 교육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일

### 광 양 시 장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포스코 홍보관 및 교육관 조성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주)포스코 대표 최정우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구 유리온실 부지와 기술교육센터 부지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홍보관과 교육관 복합 신축 및 부설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12번지 일원
- 면 적 : 24,463㎡

####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2. 7. ~ 2023. 12. 31.

## 6.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증감	
	기 정	변 경			
계	96,405,000.0	96,405,000.0	100.00		
육지부 소계	30,414,000.0	30,414,000.0	31.54		
산업시설용지	21,886,424.1	21,886,424.1	22.70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557,817.9	1,557,558.9	1.61	감) 259.0
	지 원	440,008.9	439,749.9	0.45	감) 259.0
	주 거	1,037,378.0	1,037,378.0	1.08	
	상 업	80,431.0	80,431.0	0.08	
공공시설용지	5,646,759.0	5,647,018.0	5.86	증) 259.0	
공원녹지용지	공원녹지용지	3,809,372.0	3,809,372.0	3.95	
	체육공원	318,913.0	318,913.0	0.33	
	공 원	1,338,287.0	1,338,287.0	1.39	
	녹 지	756,599.0	756,599.0	0.78	
	녹지용지	1,395,573.0	1,395,573.0	1.45	
도 로	1,235,515	1,235,774	1.28	증) 259.0	
광 장	140,821.0	140,821.0	0.15		
학 교	154,010.0	154,010.0	0.16		
주차장	15,004.0	15,004.0	0.02		
유수지	11,637.0	11,637.0	0.01		
배수펌프장	6,109.0	6,109.0	0.01		
폐수종말처리장	9,791.0	9,791.0	0.01		
폐기물처리장	264,500.0	264,500.0	0.27		
투기장	1,323,000.0	1,323,000.0	1.37		
해 면	65,991,000.0	65,991,000.0	68.46		

##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각호의 사항(변경)

### 가. 교통시설

####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결 초 일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52	14	국지도로	388	금호동 834도	금호동 836도	일반도로	-		
변경	중로	3	152	14	국지도로	388	금호동 834도	금호동 836도	일반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3-152	중로3-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형변경</li> <li>◦ 폭 원 : 14m</li> <li>◦ 연 장 : 388m</li> </ul>	◦ 광양국가산업단지내 포스코 홍보관 및 교육관 진입로 조성계획 반영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 8.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대한 사항

- 의제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의제 사항임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43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3-152호선] 사업
  - 명칭 : 포스코 홍보관 및 교육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4,230㎡
  - 규모

노선명	연장(m)	폭원(m)	시점	종점	금회시행				
					연장(m)	면적(㎡)	폭원(m)	시점	종점
중로3-152호선	388	14	금호동 834도	금호동 836도	388	4,230	14	금호동 834도	금호동 836도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포스코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2023. 12.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신청의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도로	법면	계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56,090	4,230		4,230	51,860					
1	광양시 금호동	835	도	2,479	2,479		2,479	-	광**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2	광양시 금호동	838	공	12,122	89		89	12,033	광**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3	광양시 금호동	843	도	833	789		789	44	광**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4	광양시 금호동	812	잡	19,717	355		355	19,362	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5	광양시 금호동	813	대	9,673	19		19	9,654	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6	광양시 금호동	842	잡	11,266	499		499	10,767	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 9. 승인 조건(별첨) - 게재생략

10. 상세 서류 및 도면의 고시는 생략하되 광양시청 산단과에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61-797-2932)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읍 인덕로 1100(광양시청 제 2청사)
	성명	광양시장(농산물마케팅과)
점용지역	위치	광양읍 칠성리 881-2필지
	면적	5,182㎡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웰니스팜앤파티 축제
점용기간		2023. 6. 29. ~ 7. 1.(3일) 2023. 7. 6. ~ 7. 8.(3일)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3.

### 광 양 시 장

####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1628-16 외 6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5.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7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117-9, 794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1628-16	20230503	20081001	신재 최산두 선생의 호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90-13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5길 113-9	20230503	20120502	신금일반산업단지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1063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의암2길 14(광영동)	20230503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11-1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 658	20230503	20090703	섬진강 변과 매화 재배 지에서 명명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701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5길 51-16(태인동)	20230503	20090421	법정동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744-1, 1745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광영의암7길 29	20230503	20200603	사업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724-9	전라남도 광양시 장내길 53-10(태인동)	20230503	20130415	마을지명에서 인용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1604
	성명	이미숙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1604
	면적	250㎡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농작물 경작
점용기간		2023. 5. 1. ~ 2027.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안전총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3. 4. 27.

## 광 양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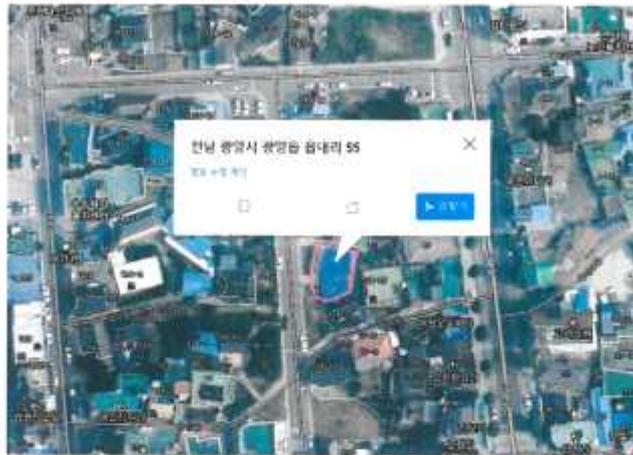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3. 5. 3. ~ 2023. 5. 18.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 로 위 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55번지	조학회	17.55m	3.0m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55번지	14.54m <sup>2</sup>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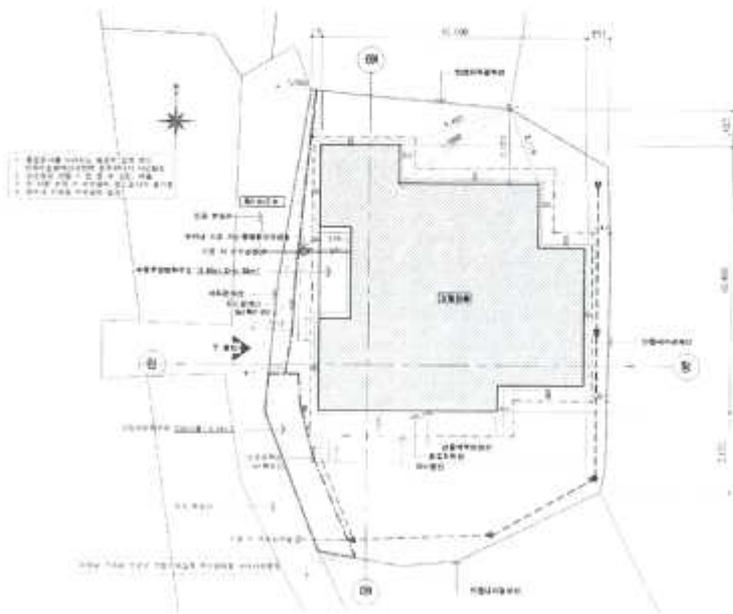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 1/600, [ ] 1/1,200

#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2. 제정이유

- 광양시과학영농관 증축사업(2021~2022년)이 완료됨에 따라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에 기여하고자 함
- 광양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산물 생산단계의 잔류농약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농산물안전분석실의 설치목적 및 운영지원(안 제 1조 ~제 4조)
- 분석의뢰 및 분석수수료(안 제5조 ~ 제8조)
- 분석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9조 ~ 제12조)
- 분석결과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13조 ~ 제14조)

###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5. 1. ~ 5. 21.(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 5. 조례 제정안: 별첨

###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술보급과장, 전화: 061-797-3539, FAX: 061-797-2596, E-mail: ironar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촌진흥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3층)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2에 따른 시료를 직접 채취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료는 농산물안전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분석을 추진할 경우 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시료관리)** ① 시료의 보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 3개월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 미검출 또는 허용기준 미만 검출 : 2개월간 보관 후 폐기

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분석 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분석 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을 따른다.

③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및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양시 농업인의 분석 수수료는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량분석료의 5분의4를 감면한다. 단,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2. 관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광양시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분석기간)** 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3에 따라 20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거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제9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7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이미 납부 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제11조(분석결과 통지)** 시장은 분석 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및 절차)** 분석을 의뢰한 사람은 분석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표시하는 경우
3. 정부보증,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제14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1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잔류농약 분석대상 항목

분석기기	분석성분	검출기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LC-MSM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에 고시된 분석성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에 고시된 분석성분별 검출기준에 따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M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에 고시된 분석성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에 고시된 분석성분별 검출기준에 따름

[별표 2]

## 시료 수거량

분석대상 시료	수거량	비 고
<p>※ 농산물</p> <p>○ 곡류·두류 및 기타 농산물</p> <p>○ 채소류</p> <p>○ 과실류</p> <p>○ 인삼류 등 고가시료</p>	<p>1 ~ 3 kg</p> <p>1 ~ 3 kg</p> <p>3 ~ 5 kg</p> <p>500g</p>	<p>1) 수거량은 시료의 개체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p> <p>2) 조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최소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단위(시료, 포장 등 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p> <p>3) 채소류(엽채류 등)에서 1개체 중량 이 20g 이하인 것은 50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p> <p>4) 인삼류 등 고가시료는 6개체 이상 또는 500g 중 무게가 많은 것을 수거량으로 할 수 있다.</p>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

[별표 3]

## 분석업무 처리절차

분석의뢰자	농산물안전분석실	주요내용
의뢰서 작성 및 시료접수	분석의뢰	의뢰서 작성
↓	시료접수 및 검토	시료, 의뢰목적 및 분석항목 검토
	분석실시	시료 전처리 및 정밀분석 진행
	결과검토	분석자료 및 기준치 검토
	통지서 작성	인적사항 및 분석결과통지서 작성
분석결과통지서 교부	결과통지	분석결과통지서 발급 및 상담
※ 처리기관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처리기한 : 20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의뢰자	성명 (법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법인소재지)			
생산자	성명			
	주소			
시 료 명				의뢰목적
분석항목				분석방법
분석결과	검출성분	검출농도(mg/kg)	허용기준(mg/kg)	비 고
<p>「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시료의 분석결과는 재배된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결과가 아닌 일부 의뢰된 농산물의 결과로써, <b>통보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b></p>				
<h2 style="text-align: center;">광 양 시 장</h2>				
발급일자 : 20 . . .		담당자 :		전화 :

#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광 양 시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2. 개정이유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23. 3. 30.)에 따른 현행화
-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규정 정비 및 투자환경 개선 제도적 근거 마련
-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규정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의 조항을 조례에 반영
-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업·투자 관련 전문가 등의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및 경비지원사항 등의 규정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내실있는 투자유치 강화 발판 마련

### 3. 주요 내용

○ 조례 “장” 순서 변경 및 신설

순서	기존	개정(안)
제1장	총 칙	총 칙
제2장	투자유치협의회	투자유치위원회 등
제3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4장	국내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제5장	-	그 밖의 지원
제6장	-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 기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했던 조례 구조 변경
- 그 밖의 지원,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장을 신설하여 구분화

○ “지식정보문화산업” 등 용어 신설 및 “전략산업” 등 정의 명확화  
-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2조

기존	개정(안)
· 용어 정의 : “외국인 투자” 등 7개	· 용어 정의 : “관내” 등 26개 (추가) · “전략산업” 이란 별표2의 시 입지 여건에 부합 하면서 . . . . .

- 조례 사용 용어 정의 구체·명확화 및 문구 수정
  - 지식정보문화산업, 기반시설,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등 19개 정의 추가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정보 문화산업, 신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4차산업, 식품산업, 기타 등 전략산업 정의 구체화

○ 투자유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인원 조정(증가)

-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3조 ~ 제9조

기 존	개 정(안)
· 협의회의 구성 : 10명 이내	· 위원회의 구성 : 15명 이내

- 조례 내 위원회의 행정사무(심의·의결) 등을 고려, 협의회 명칭 변경
-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한 인원 조정(증가)

○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9조

기 존	개 정(안)
· 외국인투자에 한정하여 자문관 위촉	· 국내·외국인 투자 자문관 위촉 가능 · 자문관 경비 지원 신설

- 외국인 투자에 한정되어 있는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 규정을 국내 기업까지 확대

○ 국내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대상 명확화(2023년 道 투자유치 업무 시행계획 반영)

-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10조

기 존	개 정(안)
< 신 설 >	· 지원대상: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이전기업, 신설·증설기업

- 기존 조례 내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혼선을 방지코자 전남도 조례를 반영하여 조문 신설

○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구체화(道 조례·규칙 반영)

-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11조 ~ 제13조 및 제26조

기 준(市 규칙)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보조금: 매입비의 30%, 3억원까지</li> <li>· 시설보조금: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li> <li>·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일 때, 6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까지</li> </ul> <p>&lt; 신 설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보조금: 매입비의 30%, 4억원까지</li> <li>· 시설보조금: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까지</li> <li>·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일 때, 12월 범위 내에서 월 60만원까지</li> <li>· 지식정보문화보조금: 관내거주자 3명 이상 일 때, 3년간 최대 5억원까지</li> </ul>

-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금액 상향 및 대상 조건 확대
- 시행규칙 내 인센티브 규정(입지·시설 보조금 등)을 조례에 반영

○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이중 지원 금지 조문 마련(道 조례 반영)

-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14조

기 준(市 규칙)	개 정(안)
<p>&lt; 신 설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지원한도: 50억원</li> <li>· 보조금 중복 지원 금지</li> </ul>

- 道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 한도액 및 중복지원 금지 조문 신설

○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 규정 신설

-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16조

기 준(市 규칙)	개 정(안)
<p>&lt; 신 설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 도로,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있다</li> </ul>

- 관내 투자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로,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근거 마련

○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道 규칙 반영)

-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27조

기 존	개 정(안)
· < 신 설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게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지식정보문화산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지식정보문화산업 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기준 정비(道 조례 반영)

-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28조

기 존(市 규칙)	개 정(안)
· 대규모 특별지원 - 250억원 이상 고용인원 150명 이상 - 지원 규모는 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	· 대규모 특별지원 ① 투자금액 500억원 ~ 1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00명 ~ 200명 : 최고 100억 원 ② 투자금액 1,000억원 ~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200명 ~ 500명 : 최고 500억 원 ③ 투자금액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500명 이상 : 최고 1,000억 원

· 대규모 특별지원에 관한 기준 상향, 세부화로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

○ 토지 매수 등의 업무 대행 규정 신설

-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29조

기 준(市 규칙)	개 정(안)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대행 대상 : 심의를 거쳐 결정</li> <li>· 업무 대행 수수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보상 또는 이주 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 준용</li> <li>· 업무 대행 경비 : 광양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치</li> </ul>

· 투자기업이 필요한 부지의 신속 확보 등을 위하여 시가 토지 매수 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 및 대행 수수료·경비 규정 신설

####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5. 1. ~ 5. 21.(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 5.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투자일자리과장, 전화: 061-797-1969, FAX: 061-797-4192, E-mail: perform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을 말하며 “관외”란 시 행정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투자”란 기업이 관외에서 주사무소, 영업소, 공장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 증설하거나 민간자본이 관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 장비 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노동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

- 대시설을 포함한다)·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통상적으로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토지의 매입비, 분양가액,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13.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략산업”이란 시 입지 여건에 적합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 유망 산업과 기존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15.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이전”이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외에서 관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8. “본사”란 기업의 법인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1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20. “수도권”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정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말한다.
21.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2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법인 등을 말한다.
2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4.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2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기업의 고충 사항 처리 협의
4. 그 밖에 투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기업인·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 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중 기관·단체의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 등)** ①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실비변상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 환경 개선의 연구, 대상기업의 자료 수집·조사·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양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 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기관의 임원 및 퇴직 공무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자문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과 출장비 등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3장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10조(국내기업 투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이전기업, 신설·증설기업,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으로써 별표2와 같다.

**제11조(입지보조금)** 시장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및 계약금의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하거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보조금)** 시장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용·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및 관내 거주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에 대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정보기술업종 기업은 관내 거주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초과 인원 당 6개월간 월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14조(지원한도 및 이중지원 금지)** ①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을 위한 경우
2. 제조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기반시설 등 지원)** ①시장은 제10조의 국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내 투자 기업 부지 및 그 주변에 도로,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7조(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 ① 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별표2 시장이 정하는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각종 보조금 등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입지 등 지원)** ①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단, 시장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금융 및 현금지원)** ①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0조(컨설팅 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생활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23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제24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와 임대하는 경우 임대 감면율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장 그 밖의 지원

**제26조(지식정보문화보조금)** 시장은 제10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별표 1의 사업을 영위하고 독립된 사업장에서 관내 거주자 3명 이상을 상시고 용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27조(국내복귀기업 지원)** 시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 최고 500억원까지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 최고 1,000억원까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규모, 결정방법 등은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 및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29조(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 ① 시장은 투자기업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④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광양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 제6장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 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부지, 시설 등을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④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⑤ 시장으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31조(민간인 또는 관련기업 활용)**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현지 활동이 요구되는 민간인 또는 관련 기업을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인 또는 관련기업을 활용 할 경우에는 민간인 또는 관련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필요한 경비 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도의 부담금 지원 등)** 시장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4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전라남도 부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4조(성과급 및 공무원 포상 등)** ① 기업 및 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소속공무원, 기관·단체·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업 및 자본유치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 및 포상 혜택을 줄 수 있다.

**제3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제13호 관련)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수의업(獸醫業)	731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3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6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적 용 사 업 내 용	비고
제조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10~34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조업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정보통신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고시된 산업분류 항목 중 중분류 부호 58~63까지 항목에 해당되는 산업체	
항만·제철산업	「항만법」 제2조 및 「대외무역법」 제51조에 규정된 항만 시설 및 제철 설비 관련 산업	
지식정보 문화산업	지식·정보·문화·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	
신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하는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	
첨단전략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고 국민의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4차산업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디지털화·정보화가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는 필연적 과정으로 산업지형, 도시규모, 생활방식 등 사회와 삶 전체에 변화를 주는 차세대 산업	
식품산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 규정한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 4조에 해당 산업 - 친환경·고품질 농특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산업 등	
기타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투자유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정보기술업종 (제13조제2항 관련)

업종명	업종
ICT산업	①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②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③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④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문화콘텐츠산업	①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②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③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④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생물의약품산업	①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②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③ 완제 의약품 제조업
	④ 한의약품 제조업
	⑤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⑥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 제품 제조업
부품·소재산업	①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②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③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04호

붙 임 :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 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 참여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 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광양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

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성별 비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한 주민
2.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시장이 그 밖에 재정·예산 관련 전문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는 연령, 지역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청년, 장애인·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미리 모집 기간과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 절차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2.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및 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 심의의결
3.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4.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배제·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소관 시의 선임 실국 주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간사가 된다.

제20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 중 문제점 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예산교육)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예산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과정과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교육을 예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4조(지역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한 성의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은 제22조의 예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동 총무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심의·조정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의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보칙

제27(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 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에 의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정책이나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05호

붙 임 :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제3항”을 “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5명 이하”를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해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의 방법에 따라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제150조제3항</u>-----            -----            -----            -----            -----</p>
<p>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의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u>5명</u> 이하로 하되, 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            -----            -----            -----            -----            ----- <u>10명</u> 이내            -----            -----.</p>
<p><u>제6조의2</u> &lt;신 설&gt;</p>	<p><u>제6조의2(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u>  <u>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해촉을 통지해야 한다.</u>  <u>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u>  <u>2. 질병 등의 사유로 제4조에</u></p>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다른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의 방법에 따라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  
-----  
-----

<p>④ (생략)  <u>제8조의2(실무보조자) ① 위원은</u>  <u>결산검사에 필요할 때에는 시</u>  <u>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u>  <u>2명 이내의 실무 보조자의 보</u>  <u>조를 받을 수 있다.</u></p> <p>② 위원을 보조하는 실무 보조  <u>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u>  <u>안서 실비를 지급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실무보조자) &lt;삭제&gt;</u></p>
--	---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06호

붙 임 :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광양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학생과 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07호

붙임 :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의 제2호 중“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4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300m 이상 떨어지고 평균 경사도가 10% 이상인 마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 (생 략)</p> <p>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u>500m 이상 떨어진 마을</u>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p> <p>2. ----- ----- <u>400m 이상 떨어진 마을 또는 300m 이상 떨어지고 평균 경사도가 10% 이상인 마을</u> ----- ----- -.</p>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08호

붙 임 :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 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제4조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 형태
3. 주택의 시설 및 설비
4.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6. 주거급여 수급 여부 및 수준
7. 자산 및 부채
8. 그 밖에 주거 약자 등 주거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및 주거급여 지원
2. 주거복지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지원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사업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9.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10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과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제20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교육·홍보
3.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4.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5조(비밀 누설 금지 등)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안 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09호

붙임 :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록”을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 및 피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 청 인	단 지 명		관리사무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피 신 청 인 <small>※ 층간소음 분쟁 은 주소만 기재 가능</small>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u>이 조례는 광양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u></p> <p>제9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u>회의록</u>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공동주택관리법</u>」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u>적용한다.</u></p> <p>제9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 <u>내용을 기록한 회의록</u>-----.</p> <p>1. ~ 4. (현행과 같음)</p>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10호

붙임 :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영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 한다. 이 경우 영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50실 이상인 건축물)
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3.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도시형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 수수료의 1/2
2. 법 제87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 이행강제금의 1/2

3. 법 제87조의3제2항제4호의 경우 : 과태료 전액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점검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기술지원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추인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한부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 복지용도 건축물(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인 경우
4. 읍·면 지역에서 창고 등 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 컨테이너 등 이동이 쉬운 구조의 주거용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 한다.</p> <p>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p> <p>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건축물</p> <p>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로</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 한다. 이 경우 영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 중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50실 이상인 건축물)</p> <p>2.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p> <p>3.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도시형생</p>

서 주택의 수가 50세대 이상  
인 공동주택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  
의에 부치는 사항

② (생략)

<신설>

활주택은 50세대 이상)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  
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안전센  
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과 같다.

1.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 수수료의 1/2

2. 법 제87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 이행강제금의 1/2

3. 법 제87조의3제2항제4호의  
경우 : 과태료 전액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

제39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생략)

<신설>

축적정 시공 여부 검사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

· 점검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기술지원

제39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추인 허가·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  
자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  
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한부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 복지용도 건축물(의  
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  
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인 경  
우

4. 읍·면 지역에서 창고 등 주  
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  
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 컨테이너 등 이동이 쉬운 구  
조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 설>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11호

붙 임 :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2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체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와 연결하거나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버스정류장</u></li> <li><u>2. 횡단보도</u></li> <li><u>3. 육교</u></li> </ol> <p><u>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u></p> <p><u>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u></li> <li><u>2. 2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체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와 연결하거나</u></li> </ol>

<신 설>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안전조치 등) ①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각종 설비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 확인
2.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을 절단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3. 그밖에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시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12호

붙 임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중 “개별건축물”을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1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고한”을 “고시한”으로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광양시의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고시하고 광양시 누리집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축물의”를 “건축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금액”을 “최종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건축물에 대한”을 “건축물 등의”로, “그 신청 전일”을 “사용승인(준공) 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산정한다”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광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 $\alpha$ )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 시 관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text{단위단가}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imes (1 + \beta)$$

- ▷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 =  $f(C)$

$$= f\left(\frac{\text{연계처리 폐수의 수질}}{\text{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right)$$

-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시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표준값 예시)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 $\beta$ )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10조제1항)									
설 치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sup>3</sup> /일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		검사일자 (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  
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  
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통보시기 :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인허가 당시 단위단  
가 계산금액으로 통보한다.

2. 부과시기 및 금액산정  
가. 부과시기는 사용승인(준  
공검사)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부의무  
자가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하는 때는 그 날을 기  
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  
과 및 재부과할 수 있다.

나. ~ 라. (생략)

3. 납부기한  
가.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

-----  
-----  
-----  
-- 고시한 -----  
-----.

② -----  
-----  
-----.

1. ----- 건  
축물 등 -----  
-----.

2. -----  
가. -----  
-----  
----- 최종 금액 -----  
-----.  
-----  
-----  
-----.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가. -----  
-----  
--- 건축물 등의 -----

인(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 전일까지로 한다.

나. (생략)

③ ~ ⑤ (생략)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sup>3</sup>/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생략)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사용승인(준공) 전-----  
-----.

나.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광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 금액을 적용한다. -----  
-----  
-----  
-----  
-----

③·④ (생략)

<신설>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13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하되,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지급하되”로 한다.

제3조 중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로 한다.

제4조 중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별표 1”을 “영 별표 2”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을 “영을 준용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22조·제26조”를 “영 제17조·제22조·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동조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동조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8. 영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의 제2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u>----- ----- ----- -----.</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u>공무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액여비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 <u>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 -----.</p> <p>② ----- ----- <u>지</u> <u>급하되</u>----- ----- -----.</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u>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u>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u>공무원</u>----- ----- ----- <u>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u>-----</p>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광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  
----- 영  
별표 2-----.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 영을  
준용하되, -----  
-----.

1. 영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  
-----.
3. 영 제17조제1항 -----  
-----  
-----.
4.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  
다.

<신 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  
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  
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  
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  
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 동조제2항중 “인사  
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  
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  
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  
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  
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  
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  
-----.

6. 영 제27조-----  
--.

7. 영 제29조제1항-----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3  
항-----.

8. 영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의 제2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 은 ‘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  
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  
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  
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  
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  
로 한다.

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  
다.

광양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4. 13.)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2014호

붙임 :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장해와 상해의 기준)”을 “(장애와 상해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해”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를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 중 “장해”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p> <p>② (현행과 같음)</p>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35호

붙 임 :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 공사"라 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시설공사를 말한다.
2. "총 공사비"라 함은 단위 공사로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총공사 예정금액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의 기술 분야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그 수는 9인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당연직공무원은 건설업무 관련 부서장 등 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정한 당연직위원은 사정에 의하여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 부서의 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자문·심의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업무소관부서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며 심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해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 및 기타 주요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 대상공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11조(심의 범위) ①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sup>^</sup>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3항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2. 단순 복합공정 또는 도로 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
3. 중앙 또는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공사, 상부기관의 설계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사

제12조(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건설기술을 사전 심의토록 할 경우에는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 및 검토 관련 서류를 배부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한 안건의 내용을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설기술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심의 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 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 계산서 및 수리 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 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

9. 중기 부분 내역서

10. 기타 조감도·모형도·지형도·설계내역서 등 심의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관련자료

②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 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자문상 필요한 자료

③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나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해야 한다.

제14조(의안 설명)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해야 한다.

제15조(결과 처리) ① 심의를 요청한 안건은 심의가 끝나면 이를 심의 요청한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특허·신기술 등 자문단 구성) ① 특허·신기술 등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특허·신기술 등 자문단을 별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대상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공법과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특허 및 신기술 등 자재가 포함된 건설공사로 한다.

③ 자문단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단원은 자문안건 특성에 따라 시 산하의 공무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단, 민간단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단원은 회의개최 시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제17조(수당 등)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특허·신기술 등 자문단 포함)의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건설기술심의 신청서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총 공 사 비 :
5. 착공 예정 년월일 :
6. 준공 예정 년월일 :
7. 설계상 특기사항 :

첨부 : 공사계획요약서(도면포함)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건설기술변경심의 신청서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 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공 사 비 :
5. 당 초 설 계 금 액 :
6. 변 경 설 계 금 액 : (증감)
7. 착 공 예 정 년 월 일 :
8. 준 공 예 정 년 월 일 :
9. 시 공 회 사 명 :
10. 변 경 사 항 :
11. 변 경 사 유 :

첨부 : 공사계획변경요약서(도면포함)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회 의 록

1. 안            건 :

2. 회 의 일 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일련번호	위    원    성    명	서            명

5. 회 의 결 과 : 별첨

[별지 제4호서식]

## 건설기술심의대장

의안번호							
공 사 명						신청인	
접수일자		사전검토 기 간		위 원 회 개최일시		완 결 일 자	
공사개요							
총공사비		금 회 공 사 비		공 사 기 간			
심 의 자문위원				의견제출 위 원			
				회 의 불참위원			
심 의 결 과							
특기사항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 건설기술심의 결과 보고

건설기술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안 건 명	심의의견	비 고

심의위원 : (인)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심의안건명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비 고

※ 심의 위원 서명을 받아 제출

광양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09호

붙 임 :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정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토목기계분야 초급 이상) 자격취득자 이어야 한다. 또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이어야 한다.</p> <p>③ (생략)</p>	<p>제4조(지정기준) ①(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10호

**붙임 :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 상황, 교통여건,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지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대상마을 지정 등) ① (생략)</p> <p>② <u>시장은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상황,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지정한다.</u></p>	<p>제2조(대상마을 지정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상황, 교통여건,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지정한다.</u></p>